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계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1·2차 시험 병합실시)
합 계			12개	50명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소 계		8개	41명	
	9급	행정	일반행정	2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일반행정(장애)	4	
			일반행정(저소득)	1	
		세무	지방세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전산	전산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	사회복지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공업	일반전기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	일반토목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방송통신	통신기술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소 계	1개	4명		
7급	행정	일반행정	4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선택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소 계		3개	5명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1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문화재관리학
		보건연구	공중보건	1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식품화학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	3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선택(1) : 농촌지도론	

- **파란색 글씨의 과목**은 비공개 출제과목으로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예시) 9급 임용 필기시험이 2024. 6. 22.인 경우, 2024. 4. 30. 현재가 기준이 됨.

2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 방법

- 1)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별 20문항)
- 2) 제3차 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면접시험 평정요소 >

- | | |
|----------------------|------------------|
|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라.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
| 마.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3)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 **공개경쟁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합니다. 면접시험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하고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며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우수” 와 “미흡” 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는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은 평정요소별 상 · 중 · 하로 종합평가하며,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시험 시간(필기시험)

시험명	계급	과목수	시험시간	배점
제1회 및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7·9급	5과목	10:00 ~ 11:40 (100분)	매 과목당 100점 만점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연구·지도사	3과목	10:00 ~ 11:00 (60분)	

3 시험문제의 출제

가.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구분	과목수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과목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18개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학개론, 전기이론, 전기기기,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7개	국어(한문 포함),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나.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 이외에 **충청권 공동출제(세종·대전·충남·충북)** 과목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구분	과목수	세종특별자치시 자체 출제 과목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개	문화사, 한국문화사, 문화재관리학, 보건학, 역학, 식품화학,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단, 연구·지도사는 별도기준 적용)

- 1)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 내로 되어 있는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 내로 되어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단,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연구·지도사 거주지 제한 요건은 아래와 같음

계 급	거주지 제한
연구사, 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1.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로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관할 행정구역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가)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사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잔여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이면 충족함

※ (예시) 2007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5일까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 00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응시가능(현재 세종시 관할 행정구역이며, 36개월 이상 거주)

*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은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지역(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지역(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으로 2012. 7. 1자로 세종특별자치시로 통합된 지역임

나)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라. 응시 자격요건 (자격증 · 면허증 · 학력 제한 / 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시험명	계급	직렬(직류)	자격요건
			(해당 요건 중 1개 이상 소지 또는 충족)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보건연구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으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마. 연구사 · 지도사 응시 자격요건 유의사항

- 1) “○○학을 전공한 사람” 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합니다.
- 2)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이라 함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으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는 대학원에서의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합니다. 또한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취득할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3)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속학교장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 의하여 판단하며, 추천서에는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4)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이라 함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이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 추천서 서식 및 작성 유의사항 「붙임3」를 참고하고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바.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응시대상자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2)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이 2024년 3월 29일 이므로, 2022년 3월 29일 이전에 기초생활보장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이 신청되어 2년 이상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소득층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은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저소득층은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수급자(보호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수급자(보호자)증명서에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읍·면·동사무소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접수: 3.25.(월) ~ 3.29.(금) <취소: 3.25.(월) ~ 4.1.(월)> <추가취소: 5.25.(토)~5.26.(일)>	필기	6.5.(수)	6.22.(토)	7.19.(금)
		면접	7.19.(금)	8.1.(목)~8.6.(화)	8.14.(수)
제2회 공개경쟁 및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접수: 7.22.(월) ~ 7.26.(금) <취소: 7.22.(월) ~ 7.29.(월)> <추가취소: 10.5.(토)~10.6.(일)>	필기	10.22.(화)	11.2.(토)	11.27.(수)
		면접	11.27.(수)	12.18.(수)~12.19.(목)	12.27.(금)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원서접수는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합니다.(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종료)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전(서류제출일)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일시/장소 등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서류제출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원서접수 고객센터 안내전화번호: ☎ 1522-0660)

2) **접수시간**: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시작일 09:00~마감일 18:00 종료)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응시수수료는 8·9급은 5,000원, 연구사·지도사·7급은 7,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면제대상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기간, 방법은 필기시험 장소공고(6.5.예정)시 안내 예정입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파일 형식 JPG, 해상도 100dpi 이상, 크기 3.5cm×4.5cm입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시험 당일 본인확인용)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동일날짜에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경우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2)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수정·변경입력 가능)
※ 접수기간 중 결제완료 후에 시험 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제 취소 후 원서작성 및 응시 수수료 결제를 다시 해야 함
- 3)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 5)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6)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응시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구비서류(장애인증명서 사본,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1] 참고)**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시각, 지체, 뇌병변 등)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거주지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직류별 가산점은 최대 1개까지 인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소지자 직류별 가산점 [붙임 2] 참고	과목별 만점의 3% ~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취득)된 경우에 한함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선발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필기시험 때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선발단위별로 9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위의 1)번과 2)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1) 행정직군: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붙임 2] 참고)**

직렬(직류) 가산비율	행정직(일반행정)	세무직(지방세)	사회복지직(사회복지)
5%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붙임 2] 참고)**

구 분	연구사, 지도사, 7급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해당분야 자격증·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직류별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직류별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 2)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합니다.
- 3)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5% 또는 3%)과 증서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4)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5)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8 영어능력검정시험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 [붙임4] 참고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구분	토플(TOEFL)		토익 (TOEIC)	텡스(TEPS)	지텔프 (G-TELT)	플렉스 (FLEX)
	PBT	IBT				
일반	530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65(level2) 점 이상	625점 이상
청각장애인	352점 이상	-	350점 이상	204점 이상	-	375점 이상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1) 2019.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11.2.) 전날**까지 접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 2019.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11.2.) 전날**까지 접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3)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사전등록 해야합니다.(단 FLLX는 성적 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기에 사전등록 불요)
 - 토익(TOEIC), 텡스(TEPS), 지텔프(G-TELP):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
 - 토플(TOEFL):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 ~ 10일 등록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1)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접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2)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10.22.~11.1.)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사전등록 해야합니다.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 [붙임4] 참고

가. 기준점수(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 2) 국사편찬위원회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1)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필요시, 시험성적 진위여부를 위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2)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10.22.~11.1.)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사전등록 해야합니다.

10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 목표: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 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 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구분모집 시험의 초과합격

가. 대상 시험: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

나. 실시 방법: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를 참고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신규임용 후 3년간,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신규임용 후 4년간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과 시험관리관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이어폰,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DMB플레이어 등의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사.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 시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만 사용 가능합니다.

(단, 수정액,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 / 사용한 경우 당해 문항은 무효처리)

아. 필기시험에서 40점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경력경쟁임용시험은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도 포함)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카.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타.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예시) 9급 임용 필기시험이 2024. 6. 22.인 경우, 2024. 4. 30. 현재가 기준이 됨.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타.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3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 2024년 변경사항

- 연구·지도사,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 (현행) 20세 이상 → (개정) 18세 이상
-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전산 직렬 응시에 필요한 필수자격증 요건 폐지 및 가산대산 자격증 신설

직류	직류	국가기술헌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전산	전산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이터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능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 수의 관련 직렬(수의7급, 수의연구사) 거주지 제한요건 폐지
 - (변경전) 충청권역 거주지 제한요건 → (변경후) 없음
-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 (변경전)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지원대상자
 - (변경후)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객관식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명시
 - (변경전) 시험당일 유효한 법·제도 등
 - (변경후)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

▶ 2025년 변경사항

- 9급 공무원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 전면 전환
 - 암기 위주 →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 강화

※ 수험생안내영상: 인사처티브이(TV/youtube.com/@mpmkorea)

○ 녹지 직렬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

-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경직류대상 '나무의사' 자격(기사 자격증 대우)

▶ 2026년 변경사항

-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관련,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요건을 적용(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운영지원과 교육고시담당 (044-300-3045)으로 문의 바라며, 공고내용은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시험정보」란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장애인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
2. 2024년도 가산대상 자격증 안내
3. 동일계통학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지도사)
4.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문
※ 별첨: 세종시 관할구역표